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59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5923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167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변론종결 2022. 1. 12.

판결선고 2022. 2. 1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1674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274,543,5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543,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그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별지